

보험금청구서

1. 인적 사항 및	보상안내	받으실 :						H당 항목에 V 표시 신규접수 □ 추가접수	
피보험자 (상해/질병 대상자)	성명		2tx+3t	주민번호	1605	52-5919558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비대상	
	회사명		12 Er	부서명		77214	하시는 일	豆は~171~十	
	주소	2	수 성 뜻 도	_	\$ C-4-7	2724		921	
보상안내 받으실 분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기타 (성명: 여서종 인 , 피보험자와의 관계: 승호씩)								
	연락처	845.	-5388-8249	E-mail		8199 cy @ toba	.co.kr		
※ 직업사항은 필수 기재사항(구체적으로 기재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DB손해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회사 가입사항(손해, 공제보험 및 단체보험) □ 다른 보험회사 가입사항 없음									
보 험 회 사		1 (智是全部日刊), 2 (), 3 ()	
3. 청구사항 🗆 상해 🗆 질병 🗆 교통사고									
사고발생일 (발병일)	9/99 년 3 월 22 일 (2시 51분			-	진단명 명/증상)	13 :	旦全は		
사고장소	도-1·3 원				료병원	천소의한제	선순의한재안정병권		
사고경위(상해) 아픈부위(질병)	H1 %								
교통사고	자	동차보험	접수 □예 □0	 	험사() 담당자/업	격락처()	
	본인차링	번호		본인	l 탑승위치	□ 운전석 □ 조÷ □ 보행중 □ 기Ⅰ			
4. 보험금 받으실 계좌 □ 자동이체계좌 요청(보험금 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수익자)의 계좌 계좌번호 : 4131~2~38~1968									
※타인계좌로 수령하시려면 별도로「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 수익자의 계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채권 양도 안내사항									
피보험자(수익자) 본인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등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청구된 진료비는 피보험자의 질병(상해)를 치료한 병원의 부당이득임을 인지하고, 해당 치료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DB손해보험에게 피보험자(수익자)가 치료 병원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원활한 채권행사를 위해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DB손해보험에게 위임합니다.									
6. 고객 확인사항 및 장기보험 청구 안내									
연락처, 지급질 하였습니다.	설차, 예상 심	사시간, 지	급기일 등)는 '보험	넘금 지급절차	안내'를 통하	여 설명 받았습니다. 분	본인은 위 설	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명에 대해 숙지하고 확인	
보험사고조사 ③ 보험금청구서,	등에 필요한 역	업무를 위 의서, 영수	탁 받은 자(당사 자호 ·증/상세내역서 등	되사, 사고조시 손해액입증시	l를 위임 받은 서류를 제출해	협력법인) 및 청구 계약	의 보험모집임	터 보험금 심사, 지급 및 인을 말합니다. 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작성일 기기	/ 년	/ 울	23 일			청구권자	415	로 영구 서명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서명	!을 하시면	되고 다른 일방의 으	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	기로 동의 및 시	서명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주식회사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장애, 허위진단,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험가입제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